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08호)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제9-15조의2)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설립·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만불 초과'에서 '300만불 초과'로 완화

2.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4-7조, 제5-2조, 제5-4조, 제9-24조, 제9-40조)

-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현행 3년)의 연장을 허용
-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기에 본인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 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 인정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기간초과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은 제외]

-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 의무 유예 가능

※ 상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